

#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령 중 개정령

『 2005년 1월 1일에 개정 공포된 내용 』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4조(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재정 경제부 · 교육인적자원부 · 법무부 · 행정자치부 · 산업자원부 · 보건복지부 · 환경부 · 노동부 · 건설교통부 · <b>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</b>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<b>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.</b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③ ~ ⑥ (생 략)</p> <p>제8조(수당 및 여비) <b>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</b>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4조(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<b>기획예산처 · 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</b></p> <p>_____</p> <p>_____ <b>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b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수당 및 여비) <b>다음에 해당하는 자</b>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</b></li> <li>2. <b>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</b></li> <li>3. <b>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</b></li> </ol>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8조의2(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·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③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 <p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제8조의3 (생 략)</p> <p>제15조(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·대행지역·<b>위탁서식·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</b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의2(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정책심의위원회를 <b>효율적으로 운영하고</b>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8조의3(의견의 청취)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제8조의4(현행 제8조의3과 같음)</p> <p>제15조(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_____ _____ <b>위탁서식 및 비치서류</b> _____ _____.</p>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28조의3(준용)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 <p>제29조(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)                    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1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2.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(함유된 용량비율이 5 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3. ~ 10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 략)</p> <p>제30조(허가대상 유해물질)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8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9. 6가크롬                      10. ~ 17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 략)</p> <p>제32조의3(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)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(精度管理)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33조의3(준용)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·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	<p>제28조의3(준용)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</p> <hr/> <p>제29조(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)                      ①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2. _____ 2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트 _____                      3. ~ 10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허가대상 유해물질) ①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&lt;삭 제&gt;                      10. ~ 1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의3(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                      _____.</p> <p>제33조의3(준용)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</p> <hr/> <p>_____.</p>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제33조의5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)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·위험설비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,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·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사용·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복합비료 제조업</p> <p>6. ·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3조의9(제재요청 대상 등)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.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46조(행정권한의 위임) ①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5의2.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·합격취소</p> <p>5의3. ~ 5의6. (생략)</p>	<p>제33조의5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) ①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5. 복합비료 제조업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)</b></p> <p>6. ·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의9(제재요청 대상 등)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.</p> <p>1. _____ 2인 _____          _____, &lt;후단 삭제&gt;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6조(행정권한의 위임) ①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5의2.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합격취소</b></p> <p>5의3. ~ 5의6. (현행과 같음)</p>

개 정 전	개 정 후
<p>5의7.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·합격취소</p> <p>5의8. ~ 7의3. (생 략)</p> <p>8.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</p> <p>9. ~ 20. (생 략)</p> <p>②(생 략)</p> <p>제47조(행정권한의 위탁)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,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5. ~ 7. (생 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7의2. ~ 7의6. (생 략)</p> <p>8. ~ 13. (생 략)</p> <p>14.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</p> <p>15. ~ 17. (생 략)</p> <p>②·③(생 략)</p>	<p><b>5의7.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합격취소</b></p> <p>5의8. ~ 7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_____ <b>지정측정기관</b> _____</p> <p>9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7조(행정권한의 위탁) ① _____</p> <p>_____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4의2.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</b>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7의2.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</b></p> <p><b>7의3. ~ 7의7.</b> (현행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6과 같음)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b>제3조의4</b> _____</p> <p>15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- 별표 1(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구정의 구분표, 제2조의2 제1항 관련)
  - 대상사업란 제1호중 “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사진처리업 제외)”을 “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사진처리업 제외), 사업지원서비스업”으로 한다.

- 별표 2(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, 제1조 제1항 관련)
  - 제16호중 “곤돌라”를 “곤돌라”로 하고, 동표 제35호를 “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”으로 하며, 동표 제36호중 “관리대상 유해물질”을 “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

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”로 하고, 동표에 제40호를 “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”으로 한다.

- 별표 3(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·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·선임방법, 제12조 제1항 관련)
  - 사업의 종류란 제10호를 “제1차 금속산업”으로 하고, 동표 제21호 내지 제2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1. 운수업	상시 근로자 1,000인 이상	2	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)를 선임하되, 별표 4의 제1호·제1호의2·제2호·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22. 통신업			
23.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(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)			
	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,000인 미만	1	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별표 4의 제3호·제4호·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. 다만,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를 선임하여야 한다.

- 별표 7(유해·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·기구 등, 제27조 제1항 관련)
  - 제7호를 “곤돌라”로 한다.
- 별표 9의2(안전·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, 제33조의4 관련)
  - 번호 1란의 진단내용란 제4호 바목 중 “연, 4알킬연, 유기용제, 특정화학물질”을 “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,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”로 하고, 동란 제6호중 “경고표지”를 “경고표시”로 한다.

- 별표 13(과태료의 부과기준, 제43조 제3항 관련)
  - 제1호의 28란·29란 및 3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8.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·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40조제1항)	법 제72조 제3항	○ 유해·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300
29.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40조제5항)	법 제72조 제3항	○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	300
31.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41조제2항)	법 제72조 제3항	○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○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	300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·연구를 위하여 제조·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. 